



충청북도
www.cb21.net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보

신	기관의 장
람	

제2323호 2004년 10월 8일 (금)

조 례

충청북도조례 제2821호	단체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2
충청북도조례 제2822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0
충청북도조례 제2823호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5
충청북도조례 제2824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18
충청북도조례 제2825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24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04-392호	측량업등록공고.....	27
충청북도공고 제2004-393호	전력시설물종합감리업등록공고.....	28
충청북도공고 제2004-394호	방염처리업등록공고.....	29

지방행정

△ 고 시		
청주시고시 제2004-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0
청주시고시 제2004-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1
단양군고시 제2004-26호	단양군매포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	34

△ 공 고		
청주시공고 제2004-64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공사완료공고.....	38
청주시공고 제2004-658호	등록·폐기공인공고.....	39
청주시공고 제2004-65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공사완료공고.....	40

기 타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 제2004-94호	통학구역조정(안)행정예고.....	41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공고 제2004-1호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선정공고.....	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9호	도로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공고.....	43

회									
람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821호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 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도부문
2. 학술부문
3. 공로부문

제3조(수상대상자) ① 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유·초·중등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
3. 공로부문 : 충청북도교육위원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체 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상)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단재교육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부 문	공 적 심 사 기 준
사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 ○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
학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 ○ 학술·예술·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
공로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 ○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단체교육상 추천서

○ ○ 부 문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위 사람을 년도 충청북도단체교육상 수상 대상으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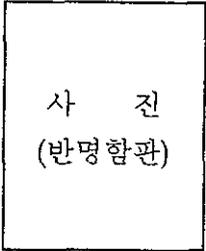
추천권자(기관명, 직, 성명)

직(사)인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조서

○ ○ 부 문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1. 학 력

기 간	학 력	비 고

2. 경 력

기 간	경 력	비 고

3. 실적 및 공적개요

기 간	실 적 및 공 적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조서

○ ○ 부 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인)

대상자명	근 무 처	심 사 의 견	추천순위

단재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 기관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13~15인으로 하고, 위원 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충청북도조례 제2822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사용”을 “사용및징수등”으로 한다.

제26조(사용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강 당		75,000원			
	전시실 (내부)		20,000원			
	전시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수영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외부지도 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빙장	1일당	10,000원				
제 천 학생회관	롤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A4-B5 30원				"		
인쇄료 (다자탈지료실)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A4-B5 180원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조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신 설)	제27조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할인 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별표2】				【별표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생략)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학생회관	(신 설)			충청 북도 학생 회관	수영 장	일일 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 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 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의무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빙장	1일당	10,000원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1인기준	제천학생회관	롤러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단체	400원	"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단체는 30인초과 적용
			단체	400원		"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			단체 800원		
공통	(생략)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액이 1인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징수등에관한조례로 함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이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함
- 사용료가 1인 기준임을 명시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함.

◎ 충청북도조례 제2823호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 (생략)</p> <p>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신설></p>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 덕동 322번지에 둔다.</p>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함
(안 제17조제2항)

◎ 충청북도조례 제2824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p>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p>제12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u>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u></p> <p>제15조의2 (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 ① <u>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7조(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7</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0</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3</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6</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9</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2</td></tr> <tr><td>6년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3</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p>② <u>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u></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 <u>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토요일휴무제</u>----- ----- ----- -----</p> <p>제17조(연가일수)①-----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9</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출산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 일수 축소 조정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안 제5조의2)
- 나.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 근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7조)
- 마.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별표 2)

◎ 충청북도조례 제2825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 · 교육국장 · 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과장
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제2조제4항중 "위촉위원"을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 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 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각 국장·공보감 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 육정보화과장·기획관리과장 및 시설과장으 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기 획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p> <p>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 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p> <p>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 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 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 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p>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 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p> <p>2. 외부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 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p> <p>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 국장이 된다.</p> <p>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 원…………… ……………</p>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원 제외)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교원은 3명 이내로 함 (안 제2조 제1항)
-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과 외부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안 제2조 제2항)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4-392호

측량업등록공고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량업을 신규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업종(등록번호)	일반측량업(제04-03-2001)
상호(대표자)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정 철 영
등록일자	2004. 9. 30
소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30-6

◎ 충청북도공고 제2004-393호

전력시설물종합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내용		
(주)지성전기 기술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82-1	육지성	종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종합감리업	충북1-7호	2004. 9. 30.
			영업범위	전력시설물	

◎ 충청북도공고 제2004-394호

방염처리업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 신규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등록업종
제2004-1호	한화종합화학 (주)	추두련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801번지 한화종합화학(주) 부강1공장	2004.10.1.	섬유류방염처리업 (카페트)

지방행정

◎ **청주시고시 제2004-8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2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진재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진재근린공원 시설확장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시행 면적

세 부 시 설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정자등)	휴 양 시 설	운 동 시 설	편 의 시 설	관 리 시 설	녹 지	합 계
면 적 (㎡)	3,421.9	1식	420	2,376	682	228.46	29,368.14	36,496.5

- 시설 규모
 - 편의시설(주차장 조성 : 682㎡) 및 조경시설(정자)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9번지
 - 성 명 : 청 주 시 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04년 11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위 치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동	지 번					
복대동	3025	공 원	36,496.5	청 주 시	해 당 없음	

7.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음.

◎ 청주시고시 제2004-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681-3~819-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청주 신영지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 = 93m. B = 8 ⇒ 12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5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7.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220 - 6364)에 비치하고 있음.

편 입 토 지 조 서

사업명 : 청주신영지구 주변도로 확·포장공사

번호	도로명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	편입 (㎡)	지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시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중3-72호선	청주	영운	681-3	잡종지	1,407	101.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81-3	삼영가스㈜		해당없음
2		"	"	681-21	잡종지	245	3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81-4	삼영가스㈜		"
3		"	"	681-23	답	2	2.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81-5	삼영가스㈜		"
4		"	용암	684-1	답	875	2.0	2/4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13	이선규		"
								1/4	청주시 상당구 수동 432-3	이옥세		"
								1/4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2	이형철		"
5		"	"	684-4	잡종지	536	197.0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7 뉴타운아파트 103-303	이동수		"
6		"	"	684-8	답	3	3.0			청주시		"
7		"	"	684-10	답	90	37.0			청주시		"
8		"	"	684-11	답	37	27.0	2/4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13	이선규		"
								1/4	청주시 상당구 수동 432-3	이옥세		"
								1/4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2	이형철		"
9		"	"	818-7	잡종지	2	2.0	2/4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13	이선규		"
								1/4	청주시 상당구 수동 432-3	이옥세		"
								1/4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77-2	이형철		"
10		"	"	819-1	도로	2,227	10.0			국(건설부)		"
계	10필지					5,424	411					

지 장 물 건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건내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규격및구조	종류	상황	수량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및내용	주소
1	정주시 용암동	684-4	철재친마	세차장	1동	1	정주시 상당구 용암동 2367	최근용		
			조림식판넬	키센타	1동	1	정주시 상당구 용암동 684-4	이범민		
계		1필지				2				

◎ 단양군고시 제2004-26호

단양군 매폏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

단양군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담삼봉유원지의 세부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단 양 군 수

1. 건 명 : 매폏도담삼봉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2. 위 치 : 단양군 매폏읍 하괴리 산20-1번지 일원
3. 면 적 : 66,100㎡
4. 변경내용 : 편익 및 관리시설 획지부분변경
 - 건축계획(연면적):종합휴게소(1,973㎡→1,391.56㎡) : 581.44㎡(감)
 - 전시판매시설(신설) 581.44㎡ : 581.44㎡(증)
5. 변경사유 :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6. 매폏 도담삼봉유원지 결정(변경)조서 : 따로붙임
7. 매폏 도담삼봉유원지 결정(변경)도면 : 실음생략
8. 가 타 : 관계도서는 단양군청건설과(043)420-3194)에 비치연람

매포도시계획시설(도담삼봉유원지) 세부시설변경 결정조서

1. 유원지(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도담삼봉유원지	단양군 매포읍 하곡리 산20-1번지일원	66,100	-	66,100	구역계변경없이 세부시설변경

2. 시설별(변경)결정조서

시설명	부지면적(m ²)			바닥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6,100		66,100	2,724.49		2,724.49	5,575.24		5,675.24
휴양시설	4,542		4,542	869.24		869.24	1,829.24		1,829.24
유희시설	1,374		1,374	-		-	-		-
편익 및 관리시설	11,810		11,810	1,497		1,497	3,126		3,126
특수시설	1,810		1,810	358.25		358.25	720		720
운동시설	250		250	-		-	-		-
녹 지	46,314		46,314	-		-	-		-

3. 유원지 세부시설(변경) 결정조서

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 시설 내용	위치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층 수(m)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100		66,100	2,724.49	-	2,724.49	5,675.24		5,675.24					
휴양 시설	소계			4,542	-	4,542	869.24	-	869.24	1,829.24	-	1,829.24	-	-	-		
	기정	2-1	전망 휴게소	하피리산 20-13일원	210	-	210	40	-	40	40	-	40	1층	-	1층	
	기정	2-2	모텔	하피리산 20-1일원	2,582	-	2,582	480	-	480	1,440	-	1,440	3층	-	3층	2동
	기정	2-3	음분약수	하피리산 20-1일원	1,750	-	1,750	349.24	-	349.24	349.24	-	349.24	-	-	-	동구조물
유희 시설	소계			1,374	-	1,374	-	-	-	-	-	-	-	-	-		
	기정	3	유시회설	하피리산 20-1일원	1,374	-	1,374	-	-	-	-	-	-	-	-	-	
편의 및 관리 시설	소계			-	11,810	-	11,810	1,497	-	1,497	3,126	-	3,126	-	-	-	
	기정	4-1	중합 휴게소	하피리 84-1일원	4,330	-	4,330	865	-	865	1,973	-	1,973	1,2,3층	-	1,2,3층	
	변경	4-1	전판시	하피리 84-1일원									581.44	3층	-	3층	
	변경	4-1	중합 휴게소	하피리 84-1일원	-	-	-	-	-	-	1,973	-	1,391.56	1,2층	-	1,2층	
	기정	4-2	상가	하피리 20-6일원	660	-	660	130	-	130	260	-	260	2층	-	2층	
	기정	4-3	식당	하피리산 20-10일원	2,516	-	2,516	402	-	402	804	-	804	2층	-	2층	
	기정	4-5	화장실	하피리산 20-17일원	541	-	541	100	-	100	89	-	89	1층	-	1층	

◎ 청주시공고 제2004-64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심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 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39-6번지 외 10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심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신봉동 백제고분군유물전시관 건립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시행 면적

합 계	유물 전시관	야외 전시관	경비·화장실	주 차 장	광장 및 녹지
8,986㎡	525.88㎡	267.26㎡	107.73㎡	1,430㎡	6,655.13㎡

- 건축 연면적

합 계	유물 전시관	야외 전시관	경비·화장실
1,185.94㎡	822.35㎡	255.86㎡	107.73㎡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번지
- 성 명 : 청 주 시 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1999년 12월 31일
- 준공일 : 2004년 9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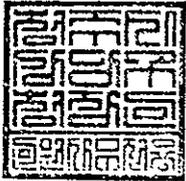
◎ 청주시공고 제2004-658호

등록·폐기공인공고

청주시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청주시 공인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청주시장 인

- 1. 사용 및 폐기일자 : 2004. 10. 08.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
- 3. 공인명 및 인영내역 :

등록공인명	인 영	폐기공인명	인 영
청주시상당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청주시상당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 청주시공고 제2004-65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5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용암2지구 제7호 어린이공원)사업
- 명 칭 : 용암1동 13통 경노당 신축공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시행 면적

합 계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녹 지
1,500.5m ²	215m ²	32m ²	130.19m ²	429m ²	81m ²	613.31m ²

- 건축면적 : 64.51m²(연면적 : 129.02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번지
- 성 명 : 청 주 시 장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착수일 : 2004년 6월 25일
- 준공일 : 2004년 9월 20일

기 타

◎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 제2004-94호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조정(안)에 앞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교육장(인)

1. 취 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추정3리(현 미원초등학교 학구)를 미원초등학교와 낭성초등학교의 공동학구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정대상 학구	현 재	조 정	대상학년	시행일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추정3리	미원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낭성초등학교 (공동학구)	전학년	2005. 3. 1.

3. 의견제출

- 가. 공고기간 : 2004. 10. 7 - 2004. 10. 28(22일간)
- 나.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2004.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다. 주 소 : 361-1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421
- 라. 기타문의 : 043-270-5862(청원교육청 관리과)

◎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공고 제2004-1호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자선정공고

2004년 10월 8일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충북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는 2004년도 충청북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명 :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총사업예산 : 50,000,000원(H/W구입비 포함)
3. 사업기간 : 2004년 10월 - 2005년 2월(5개월)
4. 사업공고 및 접수 : 2004년 10월 8일 - 10월 15일 18시까지
5. 응모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5부

사업신청서 파일 탑재 CD 1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cbdi.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9호

도로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및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182-1번지부터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산50-2번지까지(0.74km)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675번지부터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45-10번지까지(0.50km)
5. 중요경과지 : 단양~영월
6. 전용구간 : -
7. 중용구간 : -
8. 비고 : 도면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전화 : 043-842-2225)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